

대구예술대학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9.01.22. 교무위원회)

(개정 2022.05.31. 교무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함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